LocknLock

ESG위원회 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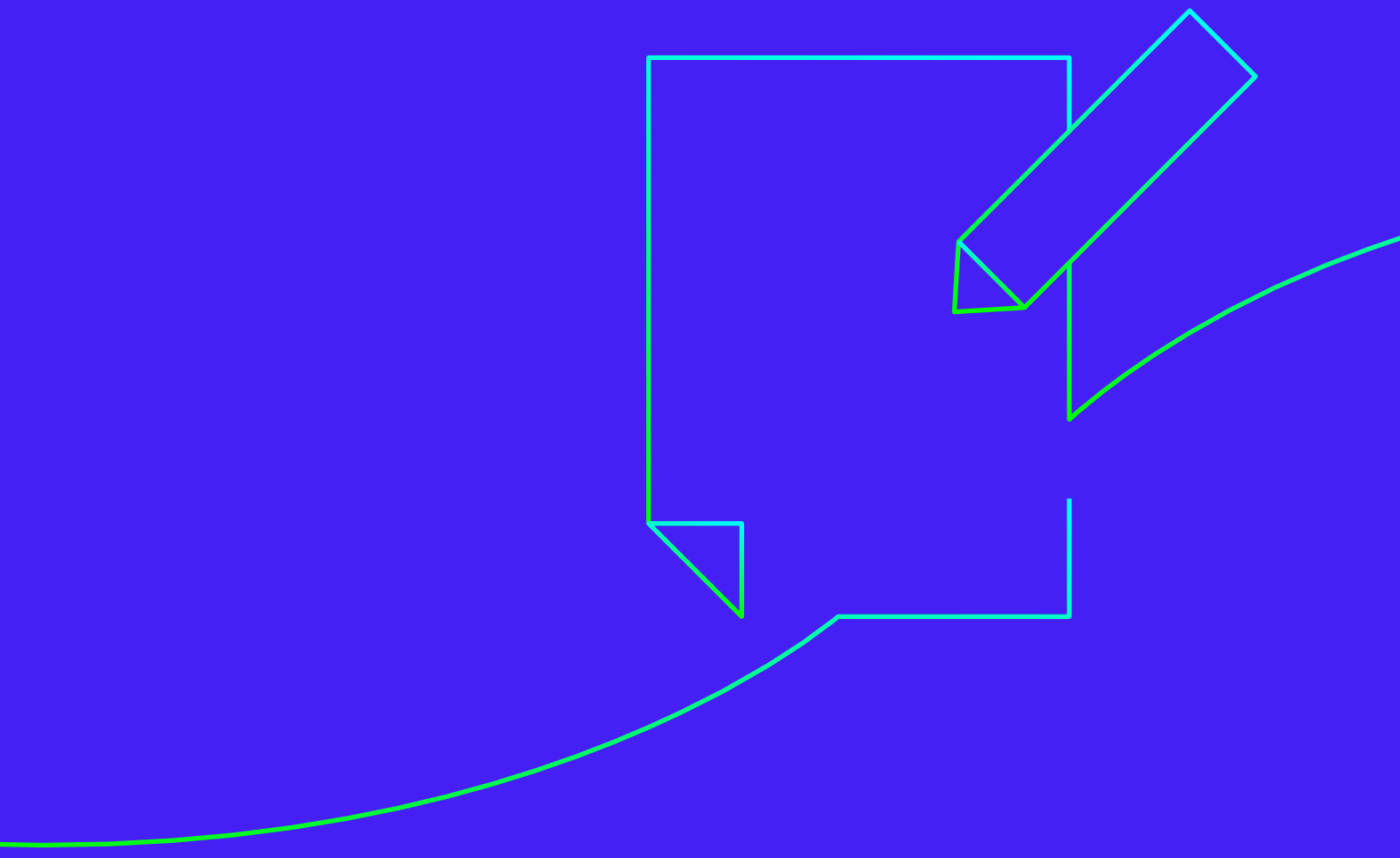

ESG 위원회 규정

제정 2024.04.01.

개정 2025.02.04.

제 1 조 [목적] 본 규정은 ㈜락앤락(이하 "회사"라고 한다.)의 정관 제 44 조의 2 및 이사회 규정 11 조 근거하여 자사의 장기적 수익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사회 내에 설치된 ESG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.)의 효율적 구성 및 운영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[적용범위]

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다만, 본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.

제 3 조 [구성]

① 위원회는 이사와 ESG 관련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3 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.)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경우 이사 임기와 동일하며, 전문위원은 계약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. 사무국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회 사무전반을 처리한다.

⑤ 위원이 사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1 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⑥ 제 1 항에 의한 구성을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 등으로 인하여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

제 4 조 [위원장]

① 위원장은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선임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 이후 처음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심의 및 결의 내용 결과를 보고한다.

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5 조 [기능]

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결의하거나 보고를 받는다

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결의한다.

1. 환경, 안전보건, 사회공헌, 지배구조 투명화, 인권, 윤리경영 등 ESG 경영 관련 전략 및 계획
2.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감축 목표 및 실행 전략
3.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보고받는다.

1. ESG 경영 관련 전략 수행 성과 및 현황
2. 비재무적(ESG) 리스크 상태 및 관리 현황
3.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
4.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환경, 안전보건, 사회공헌, 지배구조 투명화, 준법경영 등 ESG 관련 전략 수립 및 활동

②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저해할 수 있는 비재무(ESG)적 제반 리스크 상태 및 관리 현황

③ 위원회가 정한 사항에 대한 진행 현황

⑤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6 조 [회의]

① 위원회는 반기 1 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,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,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
③ 위원회는 위원이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7 조 [의사록]

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과 그 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8 조 [관계인의 출석 등]

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진, 인사 관련 담당 임원, 외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9 조 [규정의 개정]

①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②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, 이사회 규정 및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부칙

제 1 조 [시행일]

본 규정은 2024 년 4 월 2 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 1 조 [시행일]

본 규정은 2025 년 2 월 4 일부터 시행한다.